

미·일 통상마찰의 정치·경제적 분석(I)

유 경 택*

차 례

서 장 분석의 목적과 개요

제1장 미국의 보호주의와 미·일 통상마찰

제1절 미국통상법의 동향과 특징

제2절 미국의 무역적자와 보호주의

제3절 일본의 대미비교우위의 변화

제2장 미·일 통상마찰의 정치적 분석

제1절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제2절 품목별 미·일 마찰의 구조분석

제3절 금후의 미·일 마찰의 전개시나리오

제3장 무역수지 불균형과 마찰의 원인분석

제1절 미·일간의 산업경쟁력 격차

제2절 마찰의 원인과 주성분분석

제4장 미·일 구조협의와 무역수지의 균형화

제1절 미·일간의 경제구조 파라미터의 추계

제2절 일본의 대미수출특화도와 산업내무역

제5장 요약과 맷음말

참고문헌

서 장 분석의 목적과 개요

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들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1) 자유무역의 기수를 표방하는 미국이 왜 보호주의화되어 가고 있는가.

(2) 마찰을 둘러싼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떤 식으로 결정되어지는가.

(3) 미·일간 통상 마찰의 근본적 원인으로서 무엇이 생각되어질 수 있을까.

(4) 마찰에는 어떤 유형별로 몇개의 패턴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가.

(5) 1985년의 프라자합의 이후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어째서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6) 미·일 무역수지의 균형화 내지 미·일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양국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비교우위의 저하가 점차로 보호주의에의 압력을 높여, 그에 따라 미국통상법이 보호주의의 색채를 강화하며 개정되어 왔던 점을 분명히 한다. 제2장에서는 마찰을 둘러싼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이 통상법의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검토하고, 과거의 품목별 미·일 통상마찰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 통상마찰의 패턴화를 시도해 본다. 그리고 금후의 미·일 마찰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시나리오 작성과 검토를 첨부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변수의 주성분분석을 통해 마찰의 근본적 원인을 특정지우고, 미국의 대일무역적자가 미·일 통상마찰의 주성분이고, 그 대일무역적자의 대부분이 미국 자신

*상공부 공업배치환경과 화공사무관

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제4장에서는 미·일의 경제구조 파라미터를 추계하여 양국이 상호 무역불균형에 떨어지기 쉬운 체질인 것을 검토하고, 일본의 대미수출특화도를 시산하는 것에 의해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산업내 무역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제5장에서는 4장까지의 분석을 포함하여 미·일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양국에의 정책제언을 시도해 본다.

제1장 미국의 보호주의와 미·일 통상마찰

이 장에서는 미국의 보호주의의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 미국통상법의 동향과 특징을 고찰하여 미국의 무역적자와 보호주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일본의 대미현시비교우위의 변화를 시산한다. 이들의 요인이 미국의 보호주의의 근저에 있고, 그것이 미·일 통상마찰에 연결되어 간 것을 분명히 한다.

제1절 미국통상법의 동향과 특징

미국의 통상법은 미국통상정책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미합중국헌법 제1조 제8항에 의해 국제통상에 관한 규제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통상을 규제하는 것이든 그 근거는 모두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기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권한 하에서 의회는 대통령 내지 행정부에 대해 국제통상을 실시·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통상규정에 관한 근본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해도 법률에서 다 끊을 수 없는 여러가지 실시관리면에 대해서의 재량이 대통령 내지 행정부에 위임되어진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보호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앤티덤핑, 상계관세, 에스케이프 크로즈, 불공정무역관행 등의 조항에 초점을 맞추어 1962년 통상확대법으로부터 1988년 포괄통상법까지의 변천을 개관해서 특징을 찾는다.

「1962년 통상확대법」(Public Law 87-794)

- 기본적으로는 세계무역의 확대가 목적
 - 대폭적인 관세인하 권한의 대통령에 부여
 - 에스케이프 크로즈의 채용

「1974년 통상법」(Public Law 93-618)

- 1967년 캐네디라운드 종결후 국내산업보호라고 하는 정치적 압력하에 성립
 - 에스케이프 크로즈의 개정(1974년 통상법 제201조의 신설)
 - 통상법 제301조의 신설

「1979년 통상협정법」(Public Law 96-39)

- 동경라운드에서의 다각적 무역교섭(MTN)에 근거한 협정의 승인, 기존 통상법규의 개정
 - 앤티덤핑법의 개정(덤핑의 인정기관이 재무성에서 미국내 산업을 총괄하는 상무성으로 옮김에 따라 미국내 산업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 상계관세법의 개정
 - 상기 양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정이 행해져, 현재의 양법률의 기본적인 체계가 여기에서 정비되었다.

「1984년 통상관세법」(Public Law 98-573)

- 미국내 산업의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 매우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법률의 개정내지 제정이 행해졌다.

- 앤티덤핑법 내지 상계관세법의 추가적 개정

- 1974년 통상법 제201조의 추가적 개정

- 1974년 통상법 제301조의 추가적 개정

「1988년 포괄통상법」(Public Law 100-418)

- 미국경제의 경쟁력 저하가 심각화해져서 그 것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분야의 포괄적인 규제 내지 대응조치가 설정됨.
 - 제301조의 개정, 수퍼301조의 신설(USTR의 권한강화 : 외국의 무역관행의 공정·불공정의 결정, 대항조치의 내용 내지 발

동여부의 결정)

- 앤티덤핑법 내지 상계관세법의 개정
- 제201조(에스케이프 크로즈)의 개정

이상과 같이 전후 5번의 통상법의 큰 변천에서도 분명해지듯이 1970년대 이후는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따라 국내산업으로부터 의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지고, 그에 따라 상당히 보호무역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조항이 증가해 온 것이 주목되어진다.

그리고 1988년 포괄통상법에서는 미국내 산업의 경쟁력의 저하에 대응하는 규정을 새롭게 설치하여 미국내 산업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제2절 미국의 무역적자와 보호주의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미국통상법은 보호무역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면서 변천해 왔다. 여기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무역적자, 실업률이라는 기초적인 경제변수의 움직임과 희귀분석해 본다.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의 지표로서는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된 앤티덤핑과 상계관세의 건수의 합계를 취한다.

(데이터의 출소)

ITC제소수 : American Trade Politics, I.M. Destler, 1986

실업률 : 미국통상백서

무역적자, 달러의 SDR환율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of 1990

(분석기간) 1979~1985

(분석결과)

$$(1) \text{Petition} = 30.9 + 0.69\text{Atde} \quad R^2 = 0.88 \quad DW = 1.97 \\ (3.50) \quad (6.06) \quad (\text{괄호내는 } t\text{치})$$

$$(2) \text{Petition} = -0.79 + 0.69\text{Atde} + 4.10\text{Aur}(-1), \\ (-0.02) \quad (4.67) \quad (0.95)$$

$$R^2 = 0.92 \quad DW = 2.45$$

$$(3) \text{Petition} = -1147 + 2.73\text{Atde} + 32.3\text{Aur} + 671\text{Aer}(-1), \\ (-4.09) \quad (5.66) \quad (4.13) \quad (4.17) \\ R^2 = 0.99 \quad DW = 2.84$$

다만, Petition : ITC에 제소된 건수

Atde : 미국의 무역적자

Aur : 미국의 실업률

Aer : 달러의 대SDR 환율

위의 3종류의 회귀분석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압력지표의 움직임은 무역적자, 실업률 내지 「달러화강세」에 의해 유효하게 설명되고 있다. 무역적자의 확대에 따라 괴로워진 미국내 산업관계자가 앤티덤핑이나 상계관세에의 제소를 증가해 왔던 것이 추측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보호무역주의에의 압력이 되어 전절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미국통상법의 보호주의화에의 개정을 재촉하였고 그 개정은 또한 제소를 하기 쉽게 하였던 것과 같은 순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3절 일본의 대미비교우위의 변화

1985년 프라자합의 이후 엔화강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 무역불균형은 그다지 해소되지 않은 채이다. 적절한 환율의 조정폭에 관한 논의는 다른 곳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일본의 대미현시비교우위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 싶다.

(산출식)

$$\text{XRCA} = \frac{\sum_{j=1}^n X_{ij}}{\sum_{i=1}^m X_{ij}}$$

$$= \frac{\sum_{i=1}^m \text{국} i \text{에의 } i \text{산업의 수출}}{\sum_{i=1}^m i \text{산업의 수출}} \quad \frac{\sum_{i=1}^m \text{국} i \text{에의 수출}}{\sum_{i=1}^m \text{총수출}}$$

(자료의 출소) 통상백서, 각년도

(분석기간) 1964~1988

(산업의 분류) 통상백서에 따름

(분석결과) 일본의 대미현시비교우위의 동향을 정리해 본 것이 <표 1-1>임.

일반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에서는 비교우위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기계는 1964년의 0.55에서 1988년에 1.08로 상승(1.96배), 자동차는 같은 기간중 0.35에서 1.46으

〈표 1-1〉 일본의 대미현시비교우위의 동향

종 류	1964	1972	1980	1984	1988
일반기계	0.55	0.68	0.71	0.96	1.08
전기기계	1.41	1.39	0.91	1.09	0.92
반도체	0.92	0.66	1.39	1.28	0.91
금속가공기계	0.24	0.28	1.31	1.10	0.95
자동차	0.35	1.49	1.80	1.47	1.46
자동차부품	0.18	1.23	0.99	1.19	1.43
정밀기계	1.23	1.03	1.12	1.06	1.03
철 강	1.22	0.93	0.72	0.67	0.52
섬 유	0.81	0.68	0.39	0.48	0.40
화학품	0.36	0.44	0.47	0.50	0.48

(註) : 전기기계는 반도체 제외.

로 상승(4.17배), 자동차부품은 0.18에서 1.43으로 상승(7.94배)하고 있다.

한편, 철강과 섬유에서는 비교우위지표가 저하하고 있다. 철강은 1.22에서 0.52로(0.43), 섬유는 0.81에서 0.40으로(0.49) 저하하고 있다. 화학품은 변함없이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정밀기계는 약간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65년부터 1989년까지의 일본의 수출구성비의 추이에서도 분명하다.

미·일 통상마찰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마찰이 일어나서 어떤 형태로(주로 일본의 수출자주규제) 결정이 나면 그 품목의 비교우위가 저

〈표 1-2〉 중요품목의 일본의 수출동향

종 류	1965	1989
일반기계	7.4%	22.2%
전기기계	10.2%	23.4%
금속가공기계	3.6%	1.7%
자동차	2.8%	17.6%
정밀기계	11.8%	6.6%
철 강	15.3%	5.4%
섬 유	18.7%	2.5%
화학품	6.5%	5.4%
합 계	79.2%	89.6%

(註) 1)금액구성비 2)일본의 무역 P.21로부터 작성(통상산업조사회, 1990)

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섬유는 1956년부터 수출규제되어 왔고, 철강은 1966년부터 수출규제되어 왔다. 그리고 섬유와 철강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하여 비교우위 저하 경향에 있다.

금속가공기계의 많은 부분은 공작기계이다. 공작기계는 1978년부터 수출최저가격 규제를 받고 있고 1986년부터는 수출자주규제되어 왔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금속가공기계의 비교우위는 저하경향에 있다. 자동차의 경우는 지금도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1980년 시점의 수준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 자동차는 1981년부터 수출자주규제를 받고 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비교우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표에서 읽을 수 있다. 반도체는 1985년부터 앤티덤핑 제소가 계속되어 왔다. 미·일 마찰이 있어서 최초로 수출자주규제가 실시된 연도와 그후 일본의 대미비교우위지표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표 1-3〉과 같이 된다.

〈표 1-3〉 미·일 통상마찰과 일본의 대미비교우위의 변화

산업분야	최초에 수출 자주규제가 실시된 연도	대미비교우위지표의 변화			
		'64-'72	'72-'80	'80-'84	'84-'88
섬 유	1956	-0.13	-0.29	0.09	-0.08
철 강	1966	-0.29	-0.21	-0.05	-0.15
금속가공기계	1978	0.04	1.03	-0.21	-0.15
자동차	1981	1.14	0.31	-0.33	-0.02
반도체	1985	-0.26	0.73	-0.11	-0.37

(註) 1) 최초년도는 「일본의 무역」(통상산업성조사회, 1990) P.26에서, 비교우위의 변화는 〈표 1-1〉에서 작성
2) 공작기계는 수출최저가격 규제, 반도체는 앤티덤핑 규제를 받은 최초년도

「요약」

제1장의 분석에서는 다음의 2개의 가설이 검증된 것이 된다.

가설1: 미국의 무역적자가 크게 될수록 미국은 보호무역주의가 된다.

– 미국통상법은 무역적자와 함께 보호주의

적인 색채가 강화되면서 개정되어 왔다.
— 보호주의 압력의 지표로서 취해진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의 제소건수(반덤핑+상계관세)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가 0.88로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가설2 : 미·일 통상마찰이 일어나기 쉬운 분야는 대미비교우위가 상승하고 있는 분야이다.
— 지금까지 마찰이 일어난 섬유, 철강, 공작기계, 자동차, 반도체 분야가 일본의 대미비교우위가 상승하고 있던 분야이다. 마찰이 일어나서 어떤 형태(주로 일본의 대미수출자주규제)로든 결말이 나면 그 분야의 비교우위는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제2장 미·일 통상마찰의 정치적 분석

제1절에서는 미·일 통상마찰에 이르게 되기까지 미국측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제도 모델화를 시도해 본다. 제2절에서는 과거의 품목별에 의한 미·일 마찰의 매크로적인 배경을 찾아나가면서 구조분석을 통해 미·일 통상마찰의 패턴화를 시도해 본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제1,2장의 분석을 포함하여 금후의 미·일 마찰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 약간의 시나리오의 작성을 시도해 본다.

제1절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은 통상법을 제정하는 의회와 의회로부터 위임된 권한에 근거하여 통상정책을 수행하는 대통령·행정부와의 상호관계에 있다. 대통령과 의회는 통상정책에 대해 다른 대응을 하기 쉽다.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의회는 보호주의적 자세를 취하기 쉽다. 그것은 양자의 입장의 차이에 근거하는 대립이다. 즉,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제한하여 국제이익을 손상하면 전체적으로 국가이익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입장이고, 의회는 국제이익을 다소 제한해

도 국내이익의 옹호가 결국은 국가이익에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최근의 정치과정을 보고 있으면,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보호주의자의 연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정된 범위내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의회와 타협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즉, 자유무역을 제창하면서도 실제의 정책에서는 많은 보호주의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제1장 참조).

미국의 통상정책은 대통령·행정부와 의회와의 대립 또는 협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통령, 행정부, 의회 세으로 나눠서 결정과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 싶다.

(대통령)

-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다.
- USTR, ITC로부터의 보복조치의 건의에 거부권을 갖는다.
- 정치적 내지 안정보장면의 외교정책 중시
*USTR(미국통상대표부)
 - 무역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기관
 - 2국간이나 다국간의 무역·상품·직접투자의 교섭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 의회에 의해 설립된 경위로부터 의회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하다.
 - 이익집단과도 접촉이 많고,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지만 정책적 입장은 자유무역파와 보호주의파의 중간에 위치한다.

(행정부)

- 몇개의 성청이 각각 힘을 행사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권한의 분할을 피해 가며 통상정책에 종사하고 있다.
-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짚은 임기중에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 즉, 성청의 이익을 단기간에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대외교섭의 자세는 엄격하다.
- *상무성
 - ITC와 함께 덤펑과 상계관세에 대해서 조사권한을 갖는다.

– 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그만큼 강하지 않지만,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 지지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정책적 입장은 보호주의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성

– 외교정책 전반을 담당하지만 통상분야에서의 권한은 USTR에 이관되어버렸다. 정책적 입장은 자유무역적이다.

(의회)

○ 하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가 있고 선거구도 좁기 때문에 이익집단의 압력을 받기 쉽다.

○ 상원의원은 6년의 임기로 주단위의 선거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원의원보다 자유무역적이다.

○ 다만 그것은 원칙적인 것으로 현실의 행동은 꼭 그렇다고 한정할 수 없다. 다케나카 헤이조씨는 「미·일 마찰의 경제학」(일본경제신문사, 1991)에서 상원의원이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요인에 의해 보호주의적으로 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주요한 정치요인으로서 다음의 5개 요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차점득표자의 득표비율 ; 선거에 약한 의원일수록 정치적인 득점을 얻기 위해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하기 쉽다.

– 개선시기 ; 선거시기가 다가온 의원일수록 보호주의화한다.

– 출신주의 노동조합 조직률 ; 조직률이 높을수록 보호주의 압력을 받기 쉽다.

– 무역소위 ; 1985년도의 상원 외교문제 소위원회의 멤버 14인중 9인이 보호주의법안을 제출했다.

*「부기」: 5개의 경제요인(노동자 소득, 실업률, 제조업 수출관련 비율, 제조업 고용변화율, 일본계 기업 고용비율)과 합하여 (10개의 요인) 몇번인가의 테스트 결과 설명력이 높은 변수만을 선출했더니 정치변수 1개, 경제변수 4개가 의원이 보호주의적이 되는 중

요한 요인으로서 추출되었다.

정치변수로는 무역소위원회의 멤버인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경제변수로서는 제조업 수출 관련 비율, 실업률이라는 요인이 예상했었듯이 의원이 보호주의적이 되는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 미국통상법을 운용하는 의회·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다. 정치력에서 독립하여 통상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간다.

– 주로 통상법 제201조(에스케이프 크로즈 : 긴급수입구제조항) 조사, 반덤핑 내지 상계관세 조사, 제337조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조사가 행해진다.

– 조사후 권고내용을 보고서로 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한다.

○ 로비스트

– 의원과 이익단체, 로비스트는 Give & Take의 관계에 있으며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의원에 대해 그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제출해 하고 불리한 법안에 반대하도록 유도한다.

– 의회 소위원회의 증가와 함께(1987년까지 양원에서 385개의 소위원회) 이익단체·로비스트는 정책 형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크게 신장해 왔다.

이상의 분석을 포함하여 미·일 통상마찰에 있어서 미국측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의 제도 모델화를 시도해 보자. 그를 위해 다음의 가정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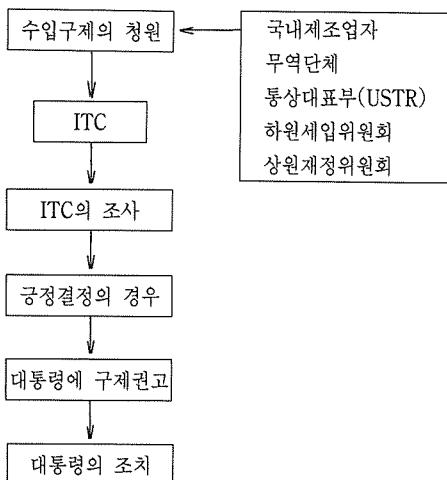
「가정」 미·일 통상마찰은 그 법적근거에 있어서 다음의 세가지 타입으로 대분된다.

- (1) 미국통상법 201조 조사에 기인한 마찰
- (2) 반덤핑 내지 상계관세 조사에 기인한 마찰
- (3) 미국통상법 301조 조사에 기인한 마찰

미·일 통상마찰이 미국측에 있어서도 법적근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미국통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 마찰을 분류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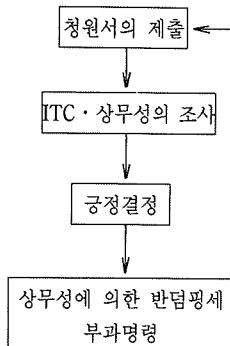
(모델1) 미국통상법 201조 조사에 의거하는 마찰

201조는 에스케이프 크로즈(긴급수입구제) 조항이며, 수입증가에 의해 국내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수입구제조치(관세부과, 수입할당 또는 통상협정교섭)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모델2) 반덤핑 내지 상계관세 조사에 의거하는 마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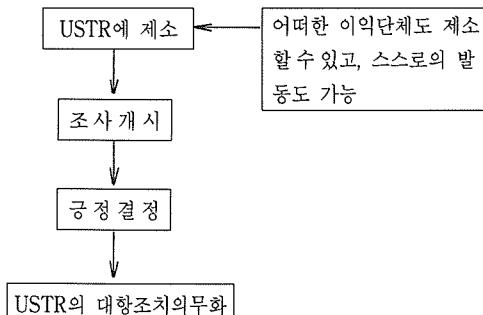
201조 조사와 비교하여 반덤핑 내지 상계관세



조사는 의회 또는 많은 저널리스트가 불공정한 수입품이라고 보고 있는 케이스를 취급한다. 따라서 피해의 인정 내지 인과관계의 인정의 기준은 비교적 덜 엄격한 편이다.

(모델3) 미국통상법 301조 조사에 의거하는 마찰

1988년 통상법 개정에 따라 USTR에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있었다. 즉, 제301조에 근거한 조사결과 외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한 것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의 결정권한을 USTR이 갖게 되었고 또한 취해야 할 대항조치의 내용 내지 발동여부에 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한 USTR이 결정한다. 301조 조사에 관해서는 USTR이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 세개의 모델로 나누어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보아왔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마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언제나 관련 이익단체로부터의 제소 내지 청원이 있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마찰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미국통상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항상 이익집단, 로비스트가 의회와 관련되어져 보호주의적인 조항의 신설 내지 강화에 작용해 왔다. 제도 모델의 검토는 미국통상정책 결정과정이 그 법적근거에 따라 3개로 대분되어 관계하는 액터가 달라져 오는 점과 보다 많은 이익단체가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왔던 점을 확인한다.

(다음 호에 계속)